

내」에서 「시의 관련 실·국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」로 하며, 조직은 현행 「집행위원회, 정책분과, 참여분과, 감시분과 등 3개 분과 위원회」에서, 「집행위원회,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, 지속발전정책분과, 홍보·교육분과」 등의 체제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실천 기능을 갖춘 추진력 있는 분과위로 구성하였으며, 또한 위원회는 환경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협의회 및 2개의 분과위원회 정원 외에 별도정원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나, 이 조항을 근거로 기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.

○ 제1조(목적)에 환경오염 감시활동이 주요목적중에 하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능중 일부로 되어 환경오염 감시활동의 축소나 경시우려가 있고, 집행위원회 구성인원 25명중 당연직위원으로 시공무원 7명이 자동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집행위원회가 서울시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 기존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기본정신이 시민참여·자율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됨.

○ 동 조례개정안이 11월 20일~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1건의 의견도 없었다는 점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듣도록 한다는 점에서, 또한 위원장 3인 공동체로 되어 책임소재의 불명확, 위원장간의 권한·조정상의 문제, 사무담당위원의 실질적인 유급직화 등은 깊이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.

(參 照)

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
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
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의 지속 가
능한 발전과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
점검 등 국제연합 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

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
울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
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
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
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
행한다.

1. 지속가능("지속가능"이라 함은 지역개발
사업 등을 경제적으로·사회적으로·환경
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
다음 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
한다. 이하 같다)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
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 제시 및
자문
2.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부
의한 주요정책·계획·제도 등의 지속가능성
평가·자문
3.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점검, 자치
구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자문
4. 환경개선·보전프로그램 개발, 환경교육·홍
보, 환경 감시활동 등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중
"위원"을 "위촉위원"으로 한다.

①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
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서울특별시(이
하 "시"라 한다) 환경관리실장·교통관리실장·
시정기획관·산업경제국장·도시계획국장·건설
국장·주택국장과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
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
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
고,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4항 내지
제6항으로 각각 하며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

①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
는 자 2인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중에서
호선하는 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 1인과 기
업을 대표하는 자 1인으로 하고, 임기는 2년
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부위원장 3인과 감사 2인을 두
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③부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의제
21실천협의회 회장과 2개 분과위원회 위원장
이 되고,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<p>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조(집행위원회)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집행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·부위원장, 당연직위원, 위촉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,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</p> <p>③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2.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 제시 3.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안전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·자문 및 의견제시 4.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<p>④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⑤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사무처리 등)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담당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사무담당위원은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8조(분과위원회 등)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. 지속발전정책분과위원회, 환경홍보·교육분과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: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, 자치구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, 시민단체 등의 시·자치구간 협력체계 구축·운영 2. 지속발전정책분과위원회 : 보전과 개발의 통합·조정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, 제시된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에 따른 시정구현상황 평가, 집행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. 환경홍보·교육분과위원회 : 환경보전 홍보·교육, 환경개선 프로그램개발, 환경오염감시 활동 <p>③협의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의안심의 등에</p>	<p>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과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위원정원 외로 한다.</p> <p>④협의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, 지속발전정책분과위원회와 환경홍보·교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, 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총무는 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</p> <p>⑤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협의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⑥협의회·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8조의2(기타 협의회의 설치) ①위원회는 제8조의 협의회 등외에 환경을 보전 또는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협의회의 위원은 환경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위원회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,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0조제3항중 "분기마다 1회"를 "연 2회"로 한다.</p> <p>제12조중 "사무국"을 "환경관리실"로 한다.</p> <p>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제2항중 "계장"을 "사무관"으로 한다.</p> <p>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6조(지속가능성평가 등) ①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한 주요정책·계획·제도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·자문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보전과 개발을 통합·조정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6조의2(서울의제21 실천 등) ①위원회는 서울의제21 실천을 위한 활동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.</p>
---	---

②위원회는 자치구의 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서울의 제21 및 자치구의 제21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등의 시·자치구간 협력 체계를 구축·운영한다.

제1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4호를 동조 제5호로 하며,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환경보전 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

4.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·고발 등 감시활동

제18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조 중 “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”을 “관계 공무원·전문가 또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감시활동”을 “위원회 등의 활동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